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83
----------	------

발의연월일 : 2017. 6. 26.

발의자 : 이현승 · 김한표 · 윤한홍  
박완수 · 김도읍 · 성일종  
강석진 · 이양수 · 박덕흠  
엄용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54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공개”를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별 행위 제한을 완화한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4543호</p> <p>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u>공개</u>) ① · ② (생략) <u>&lt;신설&gt;</u></p>	<p>법률 제14543호</p> <p>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u>공개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u> <u>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u> <u>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u>권역별 행위 제한을 완화한 경</u> <u>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집계하여</u> <u>공표하여야 한다.</u></p>